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6. 11. .
발 의 자	양진오의원 외 7명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16. 11. .

발 의 자 양진오·윤종호·김근아·김상조
김정곤·김인배·박교상·안장환의원(8인)

1.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화 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영구법화 됨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삭제(조례 제714호 부칙 제2조 삭제)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조례 제714호 「구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구미시 조례 제714호, 2008.1.1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구미시 조례 제714호, 2008.1.10>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현행과 같음) 제4조(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참고자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3.11.29.] [법률 제11847호, 2013.5.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을 삭제하여 영구법화하고, 최근 사업이 급격히 확대된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 라. 생략

마.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확고한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945호 부칙 제2조 삭제).